

「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위한 여성기업 확인요령(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-37호)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6월 5일

중 소 기 업 청 장

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위한 여성기업 확인요령 고시 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- 변화된 공공구매 환경, 확인서 용도 확대 요구, 현장확인 전문가 구성 등 현 상황에 맞게 여성기업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수정 보완

2. 관련근거

-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

3. 주요내용

구 성		변경 내용	비고
-	고시명	개정될 내용에 따라 고시명 변경 (현행)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위한 여성기업 확인요령 (개정) 여성기업 확인요령	개정
제1조	목적	확인요령의 목적을 여성기업제품 구매촉진에서 여성기업 해당여부로 범위 확대	개정
제2조의 2	용도	확인서의 용도를 공공기관 입찰,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, 자금 지원으로 명시	신설

구 성		변경 내용	비고
제3조	여성기업 확인기관	확인기관의 지회 명시 삭제 =>한국여성경제인협회(지회)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로 명시	개정
제3조의 2	여성기업 확인 전문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	여성기업 확인을 위한 전문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	신설
제4조 ①	확인신청	구비서류를 본문의 각 호에서 별지네 1호 서식으로 명시	개정
제5조	처리기한 등	① 처리기한을 최장 8일에서 7일로 단축 ② 불명확인 '부득이한 사정'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	개정
제7조 1,2	확인서 재발급, 재신청	상호변경, 인수합병시 등 신청기업의 변동 사항 발생시 재발급, 재신청 근거 마련	신설
제8조의 1	확인의 취소	남성대표자로 변경,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등에 따른 확인 취소	신설
제15조	비밀유지 의무	확인 시 습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명시	신설
제16조	운영지침 제정	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운영지침에서 규정토록 명시	신설
별지 서식	여성기업 확인 신청서	① 사전진단표 마련 ② 구비서류의 확대	개정
	여성기업 확인증	① (명칭변경) 확인증→확인서 ② 주업종, 지점현황 추가	개정
	별지 신설	①이의신청서, ③ 주식 등 지분 관계도, ③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	신설

4. 의견제출

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위한 여성기업 확인요령 고시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4. 6.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(공공구매판로과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

※ 보내실 곳 :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
공공구매판로과(☎ 042-481-4376, Fax 042-481-4418)